

#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 경과

- 제 출 : 2007. 10. 29.(사천시장)
- 회 부 : 2007. 10. 29.(총무위원회, 의안번호 제74호)
- 상 정 : 2007. 11. 07.(제11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정보통신담당관 소재성)

### 가.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27호, 2006. 10. 4공포, 2007. 4. 5 시행)되어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 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 설치 방법,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정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 검색, 전환 등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도로명주소 사용자 1/2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 후 변경토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 2)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3) 자체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4)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함(안 제9조)
- 5)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안 제12조)
- 6)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7)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방법 등을 정함(안 제19조, 안 제20조)
- 8) 사천시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안 제26조)

#### 다.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진기)

- 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도로명의 변경절차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내용, 자체 제작 설치하는 건물번호판 규격, 도로명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새주소위원회 기능 등을 사전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검토의견으로는
  -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기초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대체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중 제2호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의 자의 「2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 행정자치부(안)과 도내 20개 시·군 대부분이 「5분의 1이상」으로 조례 제정 검토하고 있으므로 타시·군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5분의 1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도로명칭 변경 요구인수를 「5분의 1이상」으로 수정할 경우 동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안 제4조제5항 “시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항을 신설한다.

-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정안 제6항은 제7항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면 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위원	질의 내용	답변자	답 변 요 지
이삼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도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람.	정보통신 담당관 소재성	○ 전문위원이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던 중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우리 부서에서 재검토한 바 수정안대로 하여도 문제는 없음.
김유자 위원	○안 제25조에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하였는데 2년과 1회 연임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임기로 보며, 위원회 성질이 전문성 등을 요하므로 임기가 짧은 것 같음.	”	○대부분의 경우 여타 위원회의 임기가 통상적으로 2년의 임기에 1회 연임하는 것이 많으며,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 없음

#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2007. 11. 07.

제안자 김석관 의원 외 5명

## 1. 수정이유

제정안의 도로명의 변경요건을 해당도로 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로서 19세 이상의 자의 「2분의 1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5분의 1이상」으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함.

## 2. 주요골자

- 제정안 제3조(도로명의 변경요건) 제2호중 「2분의 1이상」을 「5분의 1 이상」으로 함.
- 제4조제5항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 서면동의 후 도로명을 변경하고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조치사항을 추가함.
- 제4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3조제2호 경우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이 신청했을 경우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추가함.
- 안 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함.

##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중 “2분의 1이상”를 “5분의 1이상”으로 한다.

안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시장은 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심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정안·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생략)</p> <p>1. (생략)</p> <p>2. ....</p> <p>.....의 <u>2분의 1 이상</u>이 .....</p> <p>......</p>	<p>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p> <p>.....의 <u>5분의 1 이상</u>이 .....</p> <p>......</p>
<p>제4조(도로명의 변경) (생략)</p> <p>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u></p>	<p>제4조(도로명의 변경) (원안과 같음)</p> <p>⑤시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⑥시장은 제5항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심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u>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p>⑥제3조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이상」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⑦(원안 제6항과 같음)</p>